

肉과 食用屑肉의 輸出入 現況과 對策

李 柏 薫

責任研究員, 農政研究室

- I. 序論
- II. 肉類의 輸出入 現況
- III. 肉類 輸出入의 特性과 問題
- IV. 對策

I. 序論

韓國의 農水產物 輸出은 1962년 이후 18년 만에 總輸出과의 對比에서 1/10로 낮아졌다. 즉 1981년 農水產物 輸出의 目標額은 1,195百萬 달러로 전체 輸出額에 대한 寄與度는 5.8% (1962년 58.7%)로 낮아졌다는 점이다.¹ 이와 같은 전 체 輸出額에 대한 寄與度가 낮아진 만큼이나 農水產物의 輸入額도 낮아졌다면 큰 問題가 없겠으나 반대로 輸入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첫번째 問題로 등장된다. 輸入額이 높아진 品目 중에서 穀物을 제외한다면 다음은 肉類²로서 肉

類의 輸出과 輸入 現況을 品目別, 國別, 單價까지 분석하여 그 對策을 모색해 보려는 데에 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이후 肉類

表 2 肉類의 貿易收支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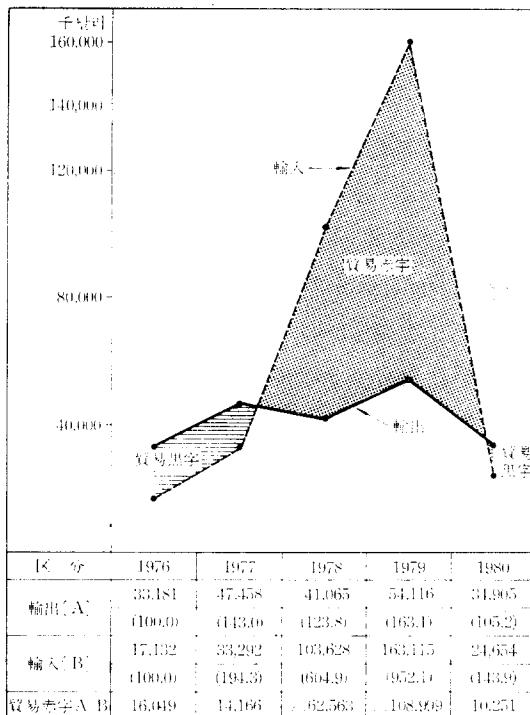


表 1 肉類의 1人當 輸出入量 推移

單位: G

年	度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4
輸出入口							
1人當 輸入(A)		658	1,065	2,449	2,841	431	96.3
1人當 輸出(B)		543	738	711	656	298	70.8
1人當純輸入(C)		115	335	1,787	2,185	134	25.5
(A-B)							

註: A=各年度 肉類의 總輸入量/各年度年末 人口

B=各年度 肉類의 總輸出量/各年度年末 人口

C=A-B

資料: 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1981에서 計算。

()는 1976년을 100으로 한 指數임。

資料: 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의 輸入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8년과 1979년으로 1인당 약 4.7斤(600g 基準1979년)에 해당되며, 1979년에는 輸出分을 제외한 純1人當 肉類輸入量은 2,185g 이나 된다. 이것을 5人 家族을 基準하면 1家口當 18斤의 肉類를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이러한 肉類는 꼭 수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輸出入 現況은 어떨했으며,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모색되어 져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肉類의 輸出入 現況

肉類의 輸出入 상황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1977년, 1980년에 각각 16.0百萬 달러, 14.1百萬 달러, 10.2百萬 달러의 黑子를 기록했으며, 1978년과 1979년에는 貿易赤字를 기록했는데 1979년의 赤字幅은 輸出의 2.0倍나 되었다. 그러나 貿易의 物量面에서는 1976년에서 1980년까지 輸入量이 많았다. 貿易額을 1976년 基準으로 볼 때 輸出은 1979년이 1.6배로 가장 많았으며 輸入도 1979년이 무려 9.5배나 되어 輸入에 지출된 外貨만도 163.1百萬 달러를 기록한 셈이다.

1. 肉類의 輸出

肉類의 輸出은 1976년 전체 農水產物 輸出의 4.3% (산 動物의 輸出은 0.8%)이며, 農產物輸出의 18.0%였으나 1980년에서는 3.2%와 15.5%로 同期間 전체 農水產物 輸出增加나 農產物의 輸出增加率 1.3~1.4배보다 낮은 1.1배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表 3>). 그러나 肉類의 輸出은 農產物 輸出의 14.6%~20.3%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3 肉類의 輸出比重

單位: 百萬 달러

區 分	1976e	1977	1978	1979	1980f	1981e	f/e (%)
總 輸 出 (A)	8,115	10,474	12,711	15,055	17,505	20,500	215.7
農水產物輸出 (B) ^b	774	979	1,033	1,202	1,096	1,233	141.6
B/A (%)	9.2	9.3	8.1	8.0	6.2	6.0	
農產物輸出 ^b (C)	176	275	281	266	225	243	127.8
C/B (%)	22.7	28.1	27.2	22.1	20.5	19.7	
肉類의 輸出 ^b (D)	33.1	47.5	41.1	54.1	34.9	18.0	105.4
D/B (%)	4.3	4.9	4.0	4.5	3.2	1.5	
D/C (%)	18.8	17.3	14.6	20.3	15.5	7.4	

資料: 1) 農水產部, 「農政手帖」, 1981

2) <表 2>에서 각각 計算함.

肉類는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商品分類方法에 따른 第 2 類와 第 5 類의 일부으로서 4單位 基準 8개 品目이며, 8단위 基準으로 하면 33개 品目이 된다.³ 이중 1976년에서 1980년까지 輸出額 萬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한 品目은 第020101號의 뼈있는 쇠고기 (with bone-in)와 뼈없는 쇠고기 (bonelness)를 포함한 쇠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表 4 主要 肉類의 輸出推移

單位: 萬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合 計	3,318 (100.0)	4,746 (100.0)	4,107 (100.0)	5,412 (100.0)	3,491 (100.0)
쇠 고 기*	17.2 (0.5)	52.7	46.2	2.2	34.5
양 고 기*	1,660.8 (50.1)	2,799.4 (59.0)	3,352.2 (81.6)	3,783.9 (69.9)	1,584.2 (45.4)
돼 지 고 기*	1,334.4 (40.2)	1,379.4 (29.1)	54.2 (1.3)	111.8 (2.1)	94.6 (2.7)
말, 노새 기타	—	41.5	4.0	31.0	13.1
설 육	—	68.1	4.4	—	5.7
닭, 오리고기	—	6.4	31.5	2.4	+
고 래 고 기*	90.5 (2.7)	170.6 (3.6)	311.3 (7.5)	166.0 (3.1)	591.6 (16.9)
토끼 고 기	—	1.1	4.1	35.0	5.3
꿩, 베이컨	9.0	9.8	6.3	24.5	—
내 장*	88.9 (2.7)	96.0 (2.0)	150.7 (3.7)	513.8 (9.5)	166.3 (4.8)
비 식 용	22.9	88.7	93.0	155.0	127.4

註: -는 輸出 없음, +는 萬弗미만의 輸出, 其他는 除外함.

*는 매년 萬弗以上의 輸出임.

資料: 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와 第02010200號의 면양과 산양의 고기 (meat of sheep and goats), 第02010300號의 돼지고기 (meat of swine), 第02040100號의 고래고기 (whale meat)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第05040000號인 動物의 腸, 衛-광이 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 whole and pieces thereof) 과 第0515號의 기타 動物性 生產品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을 들 수 있다. 이중 第0515號는 대부분이 非食用 이므로 여기에서는 論外로 한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肉類의 主宗品目은 양고기 (羊肉)로 1976년 50.1%에서 1978년에는 81.6%였으며, 1980년에도 45.4%나 된다. 그 다음은 돼지고기와 고래고기 및 내장고기의順이 된다. 한편 쇠고기는 韓牛의 特性과 쇠고기加工에 따른 輸出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實績은 1976년에서 1980년까지 年平均 30萬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반면에 햄과 베이컨의 輸出은 1979년 24.5萬 달러에서 중단되고 있는 것은 市場開拓과 品質向上面에서 비교적 水準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肉類 뿐만이 아니고 農畜產物의 加工輸出을 개발하려는 데에도 問題點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물론 加工輸出에서도 加工의 정도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羊肉 같은 경우도 自體生產 比重은 극소분량인데 비하여 輸入加工의 比重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 肉類의 國內生產輸出도 중요하지만 國內生產에서 부족되는 肉類의 輸出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不足分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肉類加工業의 發展을 통해서 肉類供給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主要肉類의 輸出品目을 輸出國別 推移를 보면 〈表 5〉와 같다. 쇠고기의 輸出은

表 5 主要肉의 國別 輸出推移

單位 : 萬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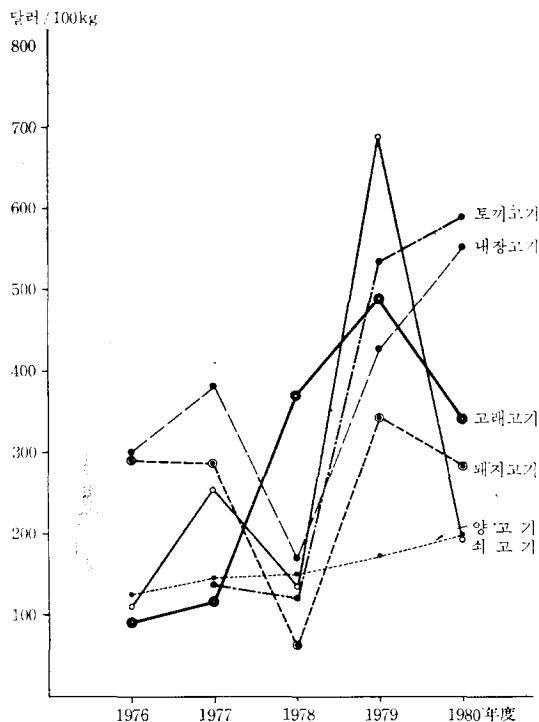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쇠고기	日本	17.0	52.7	46.2	2.2	34.5
양고기	日本	1,660.8	2,799.4	3,346.6	3760.6	1,580.1
	美國	—	—	3.8	10.8	4.1
돼지고기	日本	1,334.4	1,368.5	18.0	111.2	94.6
	대만	—	3.4	36.3	—	—
고래고기	日本	90.5	170.6	311.3	166.0	591.6
토끼고기	日本	—	1.1	4.1	35.0	5.3
내장	대만	—	—	14.6	4.4	—
	日本	88.9	96.0	118.3	271.5	106.2
	태국	—	—	4.5	—	—
	美國	—	—	—	—	59.1

資料 : 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대부분이 日本으로의 輸出이었다. 양고기의 경 우도 1978년에서 1980년까지 3.8萬~10.8萬 달러까지 美國으로, 1978년 1.8萬 달러는 대만으로, 1979년 11.5萬 달러와 1.04萬 달러가 각각 濟洲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日本으로 수출되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1977년 美國으로 7.6萬 달러, 1979년 濟洲로 0.7萬 달러, 1977년과 1978년 3.4萬 달러와 36.3萬 달러의 돼지고기가 대만에 수출된 외에 모두 日本에 수출되었다. 이외에도 고래고기와 토끼고기는 모두 日本으로의 輸出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日本으로의 輸出이 모두 계속 增加趨勢를 유지하여 온 것만도 아니다. 매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의 폭 만큼이나 價格의 변화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肉類의 輸出單價 變化를 보면 〈圖 1〉과 같다. 즉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고래고기, 토끼고기, 내장고기 중에서 1976년에 가장 낮은 單價를 기록했던 고래고기 (90.6 달러 / 100kg) 가 1980년에는 3.8배나 상승하였는가 하면, 같은 分量의 돼지고기나 양고기의 單價보다 높아졌다. 반면에 내장고기나 토끼고기는 1980년에도 높은 單價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單價比較分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가 있

圖 1 主要 肉類의 輸出價格 變化



資料：〈表 4〉에서 作成

었다.

그 하나는 고래고기를 제외하고 1978년에 單價가 1976년보다 모두 낮았던 점이다. 그러나 輸出의 物量面에서 1976년을 100으로 한 指數에서 124.2로 훨씬 많은 物量이 수출되었다.

두번째는 쇠고기의 輸出單價가 가장 높았던 것은 1979년의 694.9달러/100kg으로 1kg當 6.9 달러라는 데 있다.

세번째, 양고기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單價上昇을 기록하는 반면에 쇠고기의 輸出單價가 1976년, 1978년, 1980년 등 2년 間隔으로 單價變化曲線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위에서와 같은 낮은 輸出單價를 유지하면서 수출되어야 할 것인가? 수출된

다면 그 輸出이 國民經濟와 畜產農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肉類의 輸出單價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적정선일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심층研究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輸出되는 肉類가 國內生產이 아닐 경우와 國內生產일 경우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위의 구분에 따른 比較分析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2. 肉類의 輸入

1980년 肉類의 輸入額은 24,654千 달러로서 이 가운데 양고기(羊肉)가 56.1%인 13,831千 달러를 차지했으며, 쇠고기는 28.7%인 7,069千 달러를 차지했다. 1976년에서 1980년까지 肉類輸入의 趨勢을 보면 1979년에는 1976년의 약 10 배에 해당되는 肉類가 輸入된 후 1980년에는 1976년의 1.5배에 그치고 있다. 이중에서 쇠고기, 양고기, 내장고기, 非食肉은 매년 萬달러

表 6 主要 肉類의 輸入 推移

單位：萬 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合 計	1,713.2 (100.0)	3,329.2 (100.0)	10,362.8 (100.0)	16,311.5 (100.0)	2,465.4 (100.0)
쇠 고 기*	65.0 (3.8)	676.6 (20.3)	5,122.6 (49.4)	9,248.5 (56.7)	706.9 (28.7)
양 고 기*	1,557.6 (90.9)	2,507.1 (75.3)	3,332.2 (32.2)	3,712.3 (22.8)	1,383.1 (56.1)
돼 지 고 기*	—	+	1,708.0 (16.5)	2,998.4 (18.4)	5.2
말, 노새기타	—	37.0	1.8	25.3	22.5
설 육	—	2.6	4.4	2.5	—
칠 면 조	+	+	2.6	4.8	+
닭 고 기	—	+	77.6	1.7	1.5
오 리 고 기	—	1.3	3.8	4.7	2.3
가 금 설 육	3.1	5.4	16.6	2.2	5.2
고 배 고 기	1.2	—	—	+	127.5
토끼 고 기	—	+	+	3.5	—
햄, 베이컨	+	+	1.1	1.3	1.3
내 장 고 기*	80.6 (4.7)	91.0 (2.7)	143.9 (1.4)	272.5 (1.7)	147.4 (5.9)
비 식 육	2.4	7.2	6.3	32.4	57.8

資料：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이상을 5년간 유지해 왔으며, 돼지고기의 输入도 1977년 이후 계속되었는데 1978년과 1979년에는 전체 输入額의 16.5%~18.4%에 이르렀다. 즉 1976년과 1977년에는 양고기의 수입이 전체 输入額의 75.3%~90.9%이었으며, 1978년과 1979년에는 쇠고기가 전체 输入額의 49.4%~56.7%로 대종을 이루었으며, 1980년에는 다시 양고기의 输入額이 56.1%로 쇠고기보다 높게 나타나 쇠고기와 양고기의 输入比重이一定水準을 유지하지 않고 2년 간격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쇠고기의 替代肉類의 國內需給과 관련되어 진다.

이외에도 말고기, 노새, 벼새, 기타 고기의 输入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고래고기의 输入도 1980년에 127.5萬 달러나 된다. 그리고 畜產物의 加工品인 햄과 베이컨의 输入도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내장고기의 输入比重도 높아지고

있다.

肉類의 주요 输入品目인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输入對象國을 보면 쇠고기는 美國, 濟洲, 뉴질랜드에서 계속 5년간(1976~80년) 수입되었으며, 양고기는 日本, 濟洲, 뉴질랜드에서 계속 수입했으며, 돼지고기는 1977년 이후 美國에서 계속 수입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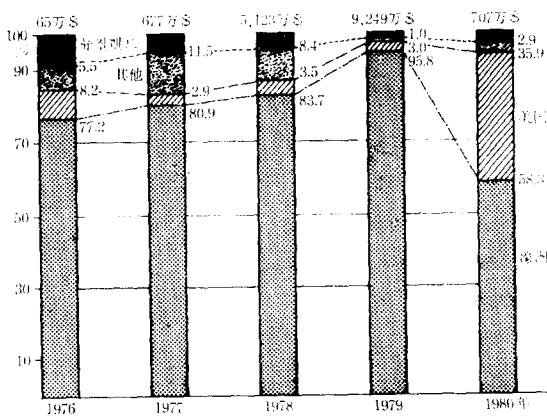
쇠고기의 输入은 주로 濟洲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1976년 77.2%, 1977년 80.9%, 1978년 83.7%, 1979년 95.8%, 1980년에 58.3%의 输入依存을 보여주고 있다.⁴ 따라서 1980년을 제외

表 7 主要 肉類의 國別 输入 推移
單位: 萬 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쇠고기					
美 國	5.3	19.4	180.6	280.0	253.4
日 本	—	—	221.9	—	—
호 주	50.2	547.8	4,288.6	8,863.0	412.0
뉴질랜드	3.6	78.0	431.6	94.2	20.7
캐나다	—	—	—	5.5	—
코스타리카	—	—	—	2.9	20.7
오스트리아	—	—	—	2.9	—
홍콩	0.2	—	—	—	—
양고기					
美 國	—	1.4	5.1	7.5	2.8
홍콩	0.2	—	—	—	—
日 本	16.5	14.9	3.0	2.8	9.0
오스트리아	78.2	—	—	—	—
호 주	507.8	1,358.9	1,620.2	1,767.2	631.7
뉴질랜드	674.5	1,131.9	1,703.8	1,934.8	739.6
돼지고기					
캐나다	—	—	—	152.6	—
美 國	—	+ 1,119.5	1,934.9	—	5.2
대만	—	—	578.6	818.9	—
필리핀	—	—	—	71.1	—
호 주	—	—	9.9	2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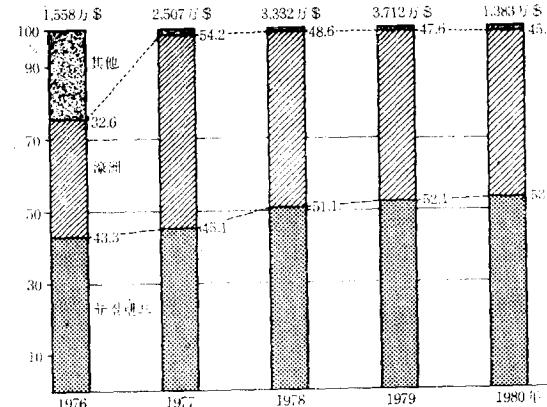
資料: KREI, 「農林水產物 貿易基本統計」, 1981.

圖 2 쇠고기의 输入比重



資料: <表 6>에서 作成.

圖 3 양고기의 输入比重



資料: <表 7>에서 作成.

表 8 肉類의 輸出入 單價變動과 交易條件
1976=100

區 分	1977	1978	1979	1980
輸出單價指數	95.0	106.6	81.6	59.9
輸入單價指數	83.2	62.9	46.1	48.5
輸出數量指數	104.1	92.8	122.0	166.9
純商品交易條件	114.8	171.4	176.9	123.5
所得交易條件	119.9	159.1	216.6	206.2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各年度 肉과 식용설육 輸出入에서 計算。

하고 1976년에서 1979년까지 77%~96%의 쇠고기 輸入을 濟洲에 의존하여 온 셈이다. 그러나가 1980년에 濟洲와 美國에서의 輸入構成比가 58.3 : 35.9로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는 1977년을 제외하고 濟洲보다 뉴질랜드產 양고기의 輸入比重이 높았으며, 양고기 輸入의 특징은 輸入對象國이 濟洲와 뉴질랜드의 두 國家에 약 50% 전후의 의존을 한 셈이다.

肉類의 交易條件(輸出單價指數／輸入單價指數 × 100)은 輸出入 單價에 있어서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을 基準으로 할 때 1977년 總商品交易條件(net barter terms of trade)은 前年對比 14.8%를 1978년에는 71.4%, 1979년에는 76.9%의 上昇을 보여주고 있으나 交易條件은 1980년에 下迴되고 있다 하겠다.

III. 肉類 輸出入의 特性과 問題

農水產物은 貿易過程에서 여러 가지 公通적인 問題點이 있지만 肉類의 경우는 製品의 加工 정도(생동과 통조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 부분의 農產物이 씨앗으로 再生되거나 食用이 되지만, 肉類는 食用으로만 利用되고 있어서 특히 再生의 生命體가 아니라는 테에 그 特性과 問題點이 제기된다.

첫째 貿易收支面에서의 問題

貿易收支面에서 輸出額과 輸入額이 같을 경우를 0으로 하고 赤字는 -, 黑字를 + 記號로 표시하면 〈表 9〉와 같다.

表 9 肉類의 貿易收支

單位: 千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輸出	33,181	47,458	41,065	54,116	34,905
輸入	17,132	33,292	103,628	163,115	24,654
貿易收支	+16,049	+14,166	-62,563	-108,999	+10,251

資料：〈表 7〉과 同一。

1976년과 1977년, 1980년의 貿易收支는 黑字를 기록했으나 이들 3년간의 貿易黑字幅이 1978년 貿易赤字幅의 64.7% 선에 머물고 있으며, 5년간을 평균하면 肉類의 貿易收支는 131,097千 달러의 赤字이며, 黑字의 폭은 總赤字幅의 23.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5년간의 赤字幅은 1980년 人口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國民 1인당 3.5달러의 부담을 안게 되는 結果를 가져온 셈이다.

둘째, 貿易의 物量面에서의 問題

貿易의 物量面에서 輸出額과 輸入量이 같을 경우를 0으로 하고 輸入物量이 輸出보다 많을 경우 -로 하며, 그 반대일 경우 +로 구분하면 〈表 10〉과 같다.

表 10 肉類의 物量 比較

單位: 톤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輸出	19,479	26,608	26,331	24,656	12,281
輸入	23,603	38,885	92,505	106,836	27,410
量比較	-4,124	-12,277	-66,174	-82,180	-15,129

資料：〈表 7〉과 同一。

위에서와 같이 1976~1980년까지 모두 物量面에서 輸入超過를 보여 주고 1976년, 1977년, 1980년의 貿易收支 黑字에 비교한다면 3개년간 31,530톤의 物量은 國內에서 소비된 肉類貿易의 利益物量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貿易收支 黑字

分에 속하는 1978년과 1979년의 輸入超過物量 148,354톤은 國民 1人當 3.96kg에 해당된다.

세째 貿易相對國의 偏向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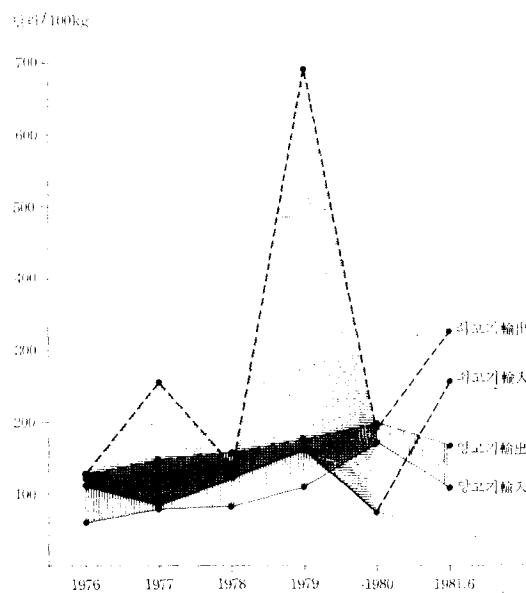
쇠고기는 濟洲와 美國에서 주로 輸入하여 國內需要를 충족시키고 日本에 集中輸出되고 있으며, 양고기도 濟洲와 뉴질랜드에서 97~99%를 수입하여 日本에 수출하고, 國內需要를 충족시키고 있다. 問題는 肉類의 輸出을 하나의 國家에 의존하지 말고 輸出入의 多邊化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째 肉類 輸出入의 單價問題

쇠고기와 양고기의 輸出入 單價를 보면 〈圖 4〉와 같다.

쇠고기에는 신선, 냉장 또는 冷凍한 것 (fresh chilled or frozen) 중에서 뼈 있는 쇠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with bone-in), 뼈 있는 쇠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without bone-

圖 4 쇠고기, 양고기의 輸出入 單價比較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in)로 구분되어 輸出이 되고 있는데 〈圖 4〉에서는 이들을 합친 單價로 분석한 것이지만 1977년 1979년의 單位幅은 대단히 큰 반면에 1980년은 輸出入 單價 폭이 좁아진 現象을 가져왔다.

양고기 (meat of sheep or goats)의 경우는 輸出入 單價의 폭이 1980년에 좁아지길 했으나 일정한 「帶」를 형성하여 왔다. 1981년 4월에는 輸入價格도 낮고 輸出價格도 낮게 되었지만 그 폭은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問題는 모든 肉類가 양고기보다 넓은 「黑字帶」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데 있다.

IV. 對策

앞에서 우리 나라 肉類의 輸出入 現況과 肉類輸出入에 따르는 特性과 問題點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그 단편성으로 인하여 向後의 對策을 제시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몇 가지 對策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肉類의 輸入을 무조건 禁止할 경우와 自由化할 경우의 貿易의 側面에서 본 見解와 이에 따른 對策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肉類의 輸入을 禁止되어야 한다는 立場과 貿易政策

肉類의 輸入을 금지해야 한다는 立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肉類의 生產農家の 경우이며 1978년 폐지와 소값의 폭락으로 養畜農家の 피해가 커지기 때문인데 그 원인으로 多量의 肉類를 수입함으로써 國內 肉類價格의 폭락을 가져왔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肉類의 價格安定을 위해서 肉類輸入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貿易의 경우 肉類全體를 輸入禁止할 것이 아니라 選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양고기의 경우는 國內生產은 小量이며 대부

분이 수입하여 現代 無換受託加工에 의한 保稅加工輸出에 의존하고 있어서 國內 内需에 따른 輸入誘發과는 관련이 적다는데 있다. 오히려 輸出의 實績을 높이고 外貨의 稼得率도 높이기 위해서는 양고기와 같은 경우는 輸出市場을 확대하는 만큼 여기에 正比例하여 輸入의 量도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수입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양고기를 자체 生產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고기의 無換受託加工輸出도 우리 나라 보다 加工質이 差 中共의 台頭로 日本의 無換受託加工先이 轉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支援策이 필요하게 된다. 그 支援方案으로서는 ① 貿易의 利益 중 일부를 安定基金化하여 加工賃金의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方法 ② 加工技術의 향상 ③ 適期에 必要量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능력을 높이는 方法 ④ 市場開拓의 外交的 노력 ⑤ 國內 生產基盤을 닦아 가는 方法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둘째 肉類의 輸入을 自由化하여야 한다는 立場과 貿易政策

肉類의 輸入을 自由化하자는 의견은 肉類消費者들로서 값싸고 質이 좋은 肉類를 多量으로 공급함으로써 國民榮養과 食生活改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견해로서 貿易을 통한 肉類供給은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안정된 供給을 보장 받을 수 없을 뿐더러 國內 養畜產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政策이 되겠다. 그것은 ① 國家의百年大計를 위해서 ② 國內產業의 保護育成을 위해서 ③ 生產者와 消費者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세째 肉類의 輸入이 불가피하게 될 때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1977년,

1980년 등 3개년에 보여준 貿易收支의 黑字를 계속할 수 있는 方案이 그 하나라고 하겠다. 이것은 Ⅲ節에서 問題點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貿易收支面에서 黑字를 가져오고 物量面에서도 十즉 잉여를 가져온다면 國民食生活改善과 外貨獲得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肉類의 무조건 輸入禁止 措處보다는 輸出入 物量과 貿易收支를 개선시켜 주는 법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生產을 촉진함과 동시에 消費의 調節로 外貨의 消費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國內 肉類需給波動에 따른 임시적인 物量不足을 메우기 위해서 適定量 이상을 過輸入하여 供給量의 급격한 變化로 國內 養畜農家나 畜產人에게 피해를 입혀서도 않된다. 그러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保險이나 畜產振興基金(畜產物導入과 放出價格間의 差額에서 생긴 基金)으로 보상하는 方法도 강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支援對策으로 畜產物價格安定法(假稱)을 제정하여 畜產物價格을 매년 또는 分期別로 예시하고 養畜農家가 畜產物을 인도할 경우 최종 豫示價格에 준하여 先導金을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畜產物을 생산할 수 있는 基盤을 확보토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畜產物價格이 하락할 때는 방판하고, 상승할 때는 재제한다고 생각하면 종래 生產者들의 認識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畜產物生產原價를 낮추기 위해서 輸入飼料의 使用도 계속 경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種子를 수입하고 먹이도 수입하는 연계성을 탈피하려는 體系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째는 貿易收支의 黑字라고 하더라도 輸出入價格보다 낮을 경우를 대비하여 備蓄事業과

表 11 主要 肉類의 貿易圓間 比較
單位 : 千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美國 [輸出*] [輸入**]	5.8	236.2	167.4	486.5	632.2
	189.9	623.7	13,925.5	24,104.9	3,481.5
日本 [輸出] [輸入]	33,150.9	46,610.3	39,664.7	50,658.9	33,347.9
	209.5	271.5	2,323.3	336.5	593.4
濠洲 [輸出] [輸入]	—	—	—	121.6	—
	6,146.4	19,572.8	59,817.9	107,186.7	10,846.5
뉴질 랜드 [輸出] [輸入]	—	—	—	10.5	9.7
	6,923.0	12,657.5	21,657.5	20,672.4	7,900.8

*韓國에서의 輸出(韓國→對象國).

**韓國에서의 輸入(對象國→韓國).

資料: 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表 12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區 分	輸 出 政 策	輸 入 政 策
日 本	基調: 自由貿易主義 (政令, 省令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自國產業保護 ② 物資의 需給調整 ③ 通商協定의 우선 (管理, 承認, 割當, 事前許可, 擔保提供 등 規定)
美 國	基調: ① 對共產國規制 ② 少數品目輸出規制 ③ 品目別 統制리스트에 의한 輸出許可	① 原則的으로 自由化 ② 少數品目의 特別 및 自律規制 實施
濠 洲	基調: ① 支援(金融, 保險, 延拂) 自由化 ② 價格管理를 위한 制限 ③ 國內產業用原資材確保를 위한 制限	① 原則的으로 自由化 ② 一部品目 規制
뉴질 랜드	基調: ① 許可制(一般, 特別, Buy別) ② 支援(租稅減免, 獎勵金) ③ 輸出產業投資制度 ④ 輸出을 위한 輸入	① 許可制 ② 輸入預置金制 ③ 國내產業關聯製品規制

資料: 大韓貿易振興公社, 海外市場, (地域編), 1981,

價格이 輸畜產物 加工處理事業의 開發에 소홀해 서도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肉類의 輸出入 規制는 지금까지 (1981년 상반기 基準) 牛肉(020101)과 豚肉(020103)

만 農水產部長官 推薦으로 輸出이 제한되었으며

그 이외의 肉類輸出은 制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다만(輸入에서는 全品目이 輸入制限을 받고 있다.) 고래 고기는 水產廳長, 그 이외는 모두 農水產部長官의 推薦을 필수로 하고 있다. 推薦對象者는 ① 蕃產業協同組合 ② 國韓農장株式會社 ③ 國內畜產物 加工業者로 되어 있다.

여섯째 肉類의 市場開拓問題이다. 주요 肉類의 貿易對象國은 日本, 美國, 濠洲, 뉴질랜드로서 輸出對象은 日本이며 輸入對象은 美國, 濠洲, 뉴질랜드로 市場의 開拓과 多邊化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4개국의 주요 輸出入政策은 <表 12>와 같이 요약된다.

끝으로 肉類의 輸出入은 國內畜產業의 保護育成과 輸出增進 및 質的, 量的 向上을 도모하여 政策的 代案提示를 위한 研究投資도 長期的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外貨稼得源으로서 뿐만 아니라 外貨稼得率이 높고, 國民의 健康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輸出產業에 중요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肉類輸入을 위해 外貨를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급기야는 國民無肉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肉類輸出入의 종합적인 長期對策^{5)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李柄薰, "산 物의 輸出入 現況과 對策", 「農村經濟」第4卷 第2號 p. 95
- 肉類는 CCCN 分類 중 0201호에서 0206호과 0504호, 0515호를 포함하는 肉과 食用屑肉(meat and edible meat offals)으로 분류되지만 本稿에서는 肉類로 통칭하였다. (CCCN 貿易品目分類 參照)
- Korean Customs Association, Tariff Schedules of Korea, 1981.
- Kym Anderson and Aurelia George, *Australian Agriculture and Newly Industrialising Asia: Issues for Research*, Canberra,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1980, p. 166
ABS, Pocket Yearbook Australia, 1980, pp. 93-94.
- 1인당 1일 適定消化量을 설정하여 食單化하거나 음식점의 肉類 1인분의 量을 定量化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과다한 量을 주문하고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일, 食肉의 種類에 따라서 음식의 稅金도 조정하거나 免稅하는 方案 등.